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넘어선 방통위의 SNI 차단 정책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미루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 UN인권위원회 –

정보인권이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 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정보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 2013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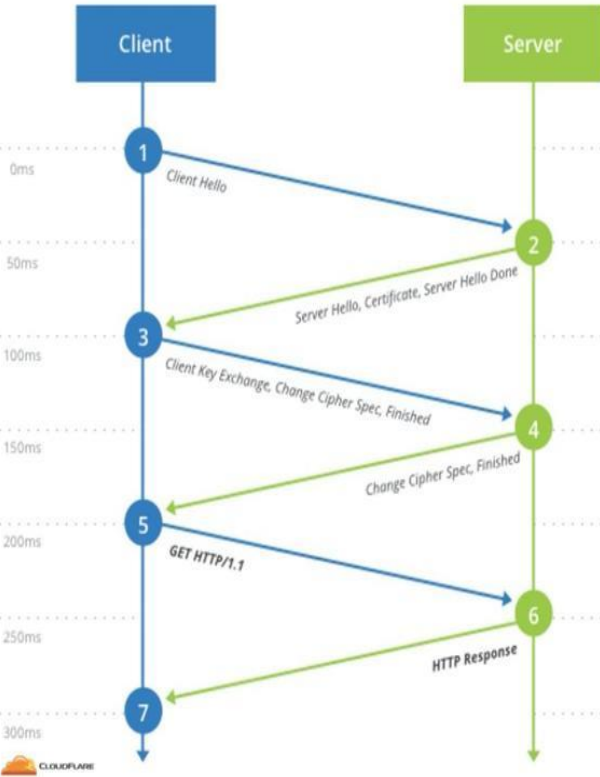
- 정보인권의 기본적인 가치는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 등 전통적인 기본권과 연결되어 있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전 지구적 확대, 이에 따른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 과정의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망중립성을 포함한)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을 포함하며 정보인권의 개념이 확장
 -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 전통적인 인권 개념이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며 변화하면서, 최근 “잊힐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 개념이 등장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SNI차단,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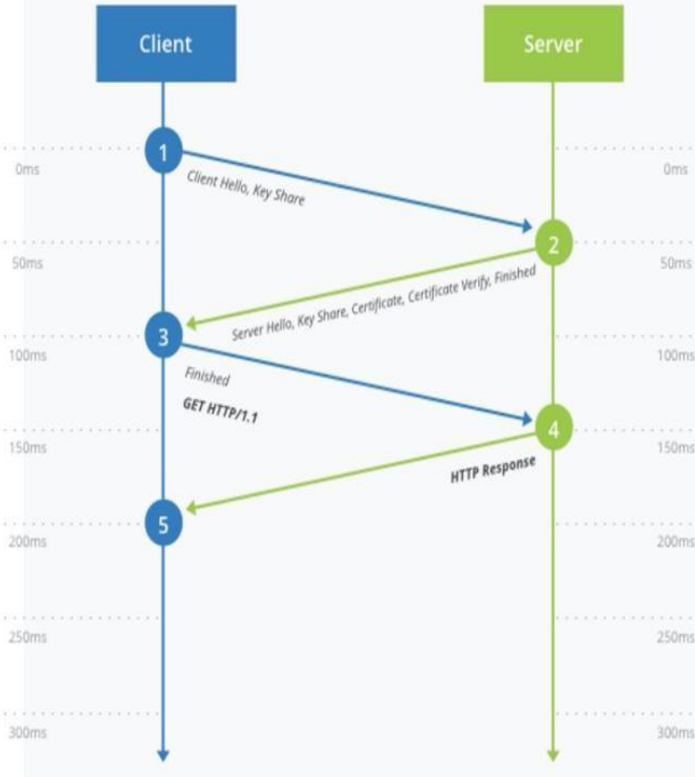
1. 인터넷 보안 조치의 허점을 이용한 정책
> 정부가 나서서 보안 허점을 활용한다?!
2. 볼 수 있다고 해서, 봐도 되는 건 아니다.
3. 방통위와 방심위. 과연 이들을 신뢰해도 좋은가?

1. 퍼블릭

TLS 1.2 (Full Handshake)



TLS 1.3 (Full Handshake)



되지 않는 오

방식이나 DNS
는 상황
특정 영역(도
것

호화되지 않
을 도입하였다.

위한 기술이

에 해당 기술이
솔로는 불법 사

2. 볼 수 있다고 해서 봐도 되는 건 아니다

- 기술적으로 특별 할 것 없는 일이다?
 - 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QoS (Quality of Service)를 유지하기 위해 망 사용량이나 추이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 Zero-rating 등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 그렇다고해서 이용자의 메타데이터 정보 (비내용 정보)를 일방적으로 들여다봐도 좋을 일인가?
-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비내용적 정보’인 메타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
믿어도 되는 걸까?

방통위의 심의 권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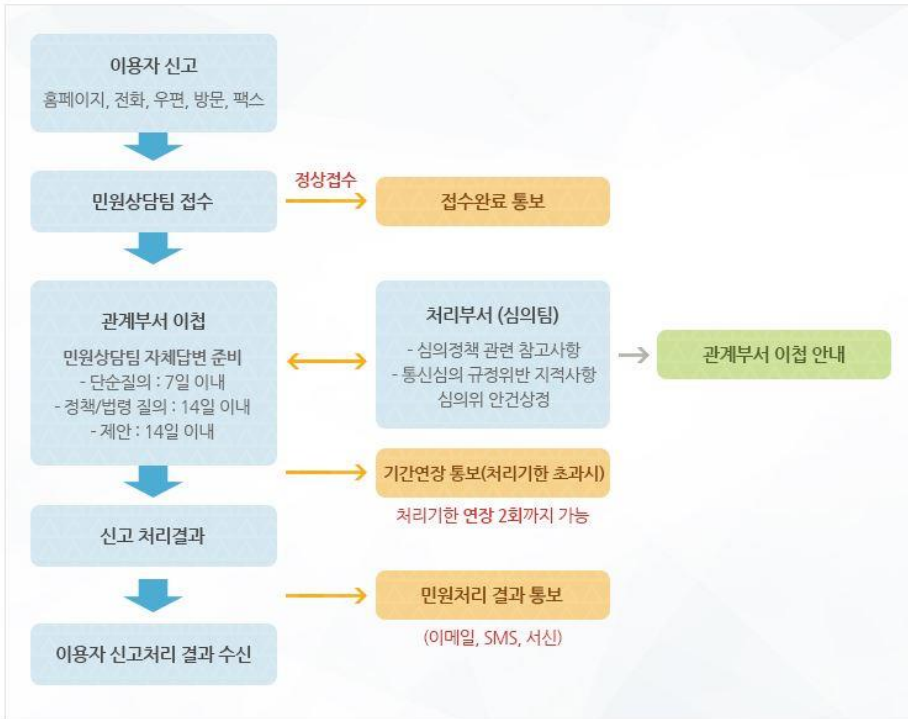
정통망법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방심위 민원 처리 과정

○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 접수 후 처리부서에서 심의 후 처리를 결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민원이 처리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 후 처리.

-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음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의 문제
- ‘위민온웹’, 성소수자 커뮤니티 차단, 정부 및 기업 비판적 게시물에 대한 차단 등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차단

[단독]'41초' 걸린 위민온웹 차단 결정

“...화면에서 보이는 사이트는 위민온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의사가 개설한 사이트이며, 미프진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기부금 지불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각 신용 거래라든가 판매정보가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보면 사우스코리아(south korea), 대한민국으로도 판매가 이뤄지는 그러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

■ 한 달새 SNI필드 차단 895 → 6233건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히 **통신심의는 안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 전수를 다 확인하면서 사무처에서 판단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물리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샘플로 몇 개를 본다. 우리도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만**

41초. 위민온웹 사례 설명이

없습니다.”
건 가까이 조치하면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다고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 자체도 없고,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 경색된 분위기만 만들 수 있고....”

3월 13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한 방심위 위원의 토로다.

[경향신문 2019.3.16 “\[단독\] ‘41초’ 걸린 위민온웹 차단 결정](#)

그동안 방심위는.....

1. 정부비판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2. 기업비판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3. 퀴어 및 여성운동 관련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조치 대상	조치 이유
2mb18nomA 트위터 계정	과도한 욕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연합) 홈페이지	국가보안법 위반
인터넷 기업 대상으로 사드 유해성 제기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사회 혼란’을 야기 한다는 것
조종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2차 보이콧이라는 이유로 대량 삭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시멘트 관련 게시물’ 삭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 훼손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국가보안법 위반
성소수자 커뮤니티 차단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근거 ‘동성애’를 음란물로 지정
위민온웹	불법의약품 판매

방심위는 독립적 민간기구인가?

- 방심위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하지만 그 심의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국내 법원에서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립 되었다.

(중략)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 (2010. 10. 18)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주 문

방송통신위원회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왜?

1. 총 심의건수 중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것
: 2008년 14.4% → 2009년 44.5% (3배 가량 증가)
2. 시정요구의 대부분이 인터넷망에서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형식의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3. 중앙행정기관의 심의제도 악용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음을 인정
4. 온라인상 표현행위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소지가 다분

접속 차단으로 충분한가?

- 접속차단을 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이 공유되는 상황
- 불법 영상의 촬영 및 배포와 관련 된 당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불법 영상의 배포를 위해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1. 불법정보의 차단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불법정보의 차단을 빌미로 방심위의 권한이 더욱 커지는 것에 반대한다.
3. 이번 규제는 기술적 결함을 이용한 차단 정책으로, 이미 해당 결함을 제거 한 다음 버전이 개발된 상태.
4. 방심위는 이번 차단 정책이 검열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동안 방심위의 행보에 비추어보건데 방심위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에 억압으로 이어 질 수 있다.
5. 방심위의 통신 심의를 폐지해야 한다. 불법정보 심판절차를 새롭게 만들어 사법심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